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기준

구분	내용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p>※ 단,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세대주일 것
유의사항	<p>※ 무주택 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p> <p>※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p> <p>※ 만 60 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p> <p>※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당첨자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	최저 : 2점 (1년미만) 최대 : 32점 (15년 이상)	최저 : 5점 (0명) 최대 : 35점 (6명)	최저 : 1점 (6개월 미만) 최대 : 17점 (15년 이상)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본 서식은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정보제공을 하기위하여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인쇄 및 편집 과정에서 오타가 있을수 있으며, 혼돈을 야기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질의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식을 근거로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